

업무협약서

(Memorandum of Understanding)

대구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와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당사자 간의 우호협력관계를 확인하고 각자의 책임을 인식하며, 상호 호혜와 평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이 협력할 것을 합의한다.

제1조(목적) 대학과 재단은 국가가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에 의한 공동의 이익을 도모한다.

제2조(협력내용) 대학과 재단은 다음 사항에 대해 상호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1. 차세대 리더 육성을 위한 멘토링 사업
2. 인재육성 및 학자금 지원사업에 대한 정보교환
3. 학자금 및 장학사업에 대한 이중지원방지 등 정보교류
4. 의지와 능력이 있는 학생에 대한 학자금 지원사업
5. 학자금 등 관심 사업에 대한 공동연구
6. 국가시책 및 공동사업에 대한 보유자료 제공 등 상호 협조
7. 공동사업에 대한 적극적 홍보
8. 기타 위 각호와 관련된 사항

제3조(개별협약의 체결) 상호 협력하여 수행할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기관장의 위임을 받은 자가 사안별로 개별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전담부서 및 실무위원회 구성) 대학과 재단은 제반 업무협력을 위해 전담부서와 책임자를 지정하고, 사안별 협력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분쟁해결) 본 협약서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한 분쟁은 당사자 간의 상호협력에 의하여 우호적으로 해결하며, 제3자의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6조(비밀유지) 본 협약서에 의하여 교환되는 각종 정보 등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호간의 공동 사업추진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외부에 누출 및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협약 종료 이후에도 같다.

제7조(협약의 해지) 협약을 계속 이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상호간에 발생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경우 상대방은 협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다.

제8조(법적 구속력) 본 협약서는 대학과 재단의 상호 업무에 관한 협력사항을 열거한 것으로 제6조를 제외하고는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

제9조(비용) 본 협약서에 의하여 시행되는 상호방문 및 협력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상호 합의된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기타)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별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11조 (발효일 및 유효기간 등)

- ①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며 쌍방이 서명한 날부터 발효되고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 ② 본 협약의 유효기간은 만료일 1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으로부터 협약의 변경 또는 폐기에 관한 서면 통보가 없는 한 자동적으로 2년씩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 ③ 본 협약의 증명을 위해 협약서를 2부 작성, 서명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1년 6월 27일



대구대학교

총장 흥덕률

이경숙



이사장 이경숙

이경숙